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02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박용갑 · 조인철 · 박상혁
어기구 · 허 영 · 박희승
황명선 · 김 윤 · 권칠승
이재관 · 서삼석 · 복기왕
소병훈 · 장종태 · 박선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

성을 높이고 호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달”을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10월”을 “매월 1일”로, “달”을 “날”로 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우수자”를 “우수자 또는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로, “표창”을 “표창 또는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효</u>”란 자녀가 부모 등을 <u>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u>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u>10월</u>을 효의 달로 정한다.</p> <p>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u>보건복지부장관</u>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u>우수자</u>를 선정하여 <u>표창</u>을 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 ----<u>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9조(효의 날) ----- ----- -----<u>매월 1일</u>----- -----<u>날</u>-----.</p> <p>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u>정부는</u>----- ----- -----<u>우수자 또는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u>-----<u>표창 또는 포상</u>-----.</p>